

학칙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
제28조(교양과목)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하며, 인문사회, 자연, 공학, 예체능, 외국어 및 기타영역으로 구성한다.	제28조(교양과목) 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<u>졸업이수학점의 20%이상</u> 으로 하며, 인문사회, 자연, 공학, 예체능, 외국어 및 기타영역으로 구성한다.
	시행일 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개정된 제28조(교양과목) 교양과목의 이수학점 적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4조(성적평가 등급)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다음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, 실기 및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과 강좌의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교과목은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2010.10.1.,2014.9.1.>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A</th><th>B</th><th>C</th><th>D</th><th>F</th></tr><tr><td>교양</td><td>0~30%</td><td>0~60%</td><td colspan="3">자율</td></tr><tr><td>전공</td><td>0~30%</td><td>0~70%</td><td colspan="3">자율</td></tr></table> ※ 단,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교양과목은 60%, 전공과목은 70%를 초과할 수 없다.	구분	A	B	C	D	F	교양	0~30%	0~60%	자율			전공	0~30%	0~70%	자율			제24조(성적평가 등급) 성적평가는 A등급 이상이 50%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및 실험·실습, 실기 교과목은 학과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학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단, 사회적 재난 및 재해, 천재지변, 전염병이 창궐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성적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A</th><th>B</th><th>C</th><th>D</th><th>F</th></tr><tr><td>교양</td><td>0~50%</td><td colspan="4">자율</td></tr><tr><td>전공</td><td>0~50%</td><td colspan="4">자율</td></tr></table>	구분	A	B	C	D	F	교양	0~50%	자율				전공	0~50%	자율			
구분	A	B	C	D	F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양	0~30%	0~6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공	0~30%	0~7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A	B	C	D	F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양	0~5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공	0~50%	자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부 칙 (시행일) 1.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